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62238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3. 19.

판 결 선 고 2021. 4. 23.

주 문

1. 피고가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가. 원고는 2011. 8. 31. [redacted]시 B외 4필지 C건물 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64.912㎡(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E와 각 2분의 1지분씩 분양받아 2012. 1. 3.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배우자 E가 2019. 9. 30. 사망함에 따라 2020. 2. 21. 다른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 중 [redacted]구 F아파트 제11층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26. 이 사건 아파트 상속과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과세표준 1,432,000,000원에 표준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취득세 40,096,000원, 농어촌특별세 2,864,000원과 지방교육세 2,291,000원을 합한 45,251,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20.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휴양콘도미니엄(별장)이어서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한 1가구 1주택에 따른 세율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28,640,00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20. 4. 8.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휴양콘도미니엄으로 관광숙박시설 또는 별장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있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은 별장을 주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 여부는 공부상 기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황이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등기부상 건물내역이 관광숙박시설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위치한 C건물은 주거형 콘도로 분양되어 다수의 입주민이 마치 아파트와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원고도 남편인 E와 공유로 소유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상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는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은 '주택'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는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7호와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 해석을 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요건 등에 바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주택법 제2조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관하여 건축법령의 용도별 건축물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건축법령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별장에 관하여는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나, 숙박시설은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 31. 휴양리조트 관광개발사업자인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에 분양 목적물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표시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번호와 일자를 특정하여 관광숙박시설물임을 명시하였다.

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 용도란에는 '휴양콘도미니엄'이라고 등록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내역에는 '관광숙박시설'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대지 지목은 유원지로 되어있다.

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위치한 C건물 안에는 9홀 규모의 골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아쿠아풀, 사우나 등의 대규모 휴양시설이 비치되어 있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같은 방실이 약 930여 개가 있다. 위 방실에 대하여 각 공동관리비와 세대관리비가 부과되는데, 공동관리비는 C건물의 전체 휴양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비용으로 각 방실에 연 단위로 동일한 금액(2019년도 기준 연 390만 원)이 부과되고, 세대관리비는 방실별 가스, 전기, 수도 사용량에 대응하는 관리비로 통상 47평형은 월 15~20만 원, 55평형은 월 20~25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세대관리비 부과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월	40,010원	118,720원	138,890원	55,670원
2월	28,820원	53,280원	118,380원	55,740원
3월	25,070원	48,510원	64,220원	50,520원
4월	46,210원	56,350원	59,250원	51,090원
5월	60,530원	56,610원	63,440원	53,670원
6월	57,210원	64,610원	64,850원	59,100원
7월	57,190원	70,950원	63,430원	63,320원
8월	52,050원	151,130원	99,610원	67,720원
9월	35,010원	87,410원	63,090원	53,980원
10월	41,930원	65,520원	58,830원	50,560원
11월	40,390원	66,560원	59,210원	49,900원
12월	40,540원	75,520원	56,550원	59,800원
합계	524,960원	915,170원	909,750원	671,070원

라) 한편, C건물은 관광진흥법의 규제를 받는 일반 휴양콘도미니엄과 다르게 분양 당시 시행되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의해 가족 2인이 공유로 객실을 분양받으면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주거형 콘도로 건설·분양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면서 제주도에 방문할 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원고 가족만의 독립된 휴양 공간으로 사용하여 왔다.

마) E가 2019. 9. 30. 사망함에 따라 E 소유의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자녀인 I이 상속하여 2020.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I은 상속받은 위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취득신고를 함에 있어 별장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에 의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조 제1항 제8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그 기능, 구조 등에 비추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주거형 콘도에 해당하므로 일응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의 정의규정에는 부합해 보이나, 구 지방세법은 구 소득세법과는 달리[1]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분양 목적물이 휴양콘도미니엄으로 특정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휴양리조트 관광개발사업자인 H 주식회사가 분양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아닌 관광숙박시설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사건 건물의 내역이 주택이 아닌 관광숙박시설로 되어있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그 건물 용도가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되어있는 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대표적인 휴양지인 제주도 내의 대규모 휴양시설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 '주택'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의 '주택'의 정의규정에 따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라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1)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한다며 그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5. 4 .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계산식 생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5.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로 개정되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전의 것)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 구소득세법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24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끝.